|  |  |  |
| --- | --- | --- |
| **사용권 허가에 따른**  **기술양도소득의 기업소득세 관련**  **문제에 대한 국가세무총국의 공고**  국가세무총국공고 2015년 제82호  <중화인민공화국 기업소득세법> 및 그 실시조례, <국가자주혁신시범구의 조세시범정책을 전국에서 확대실시할 것에 관한 재정부·국가세무총국의 통지>(재세[2015]116호)의 규정에 근거하여 사용권 허가에 따른 기술양도소득의 기업소득세 관련 문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1. 2015년 10월 1일부터 전국 범위 내의 거주민기업이 5년 이상(5년 포함, 아래도 같음)의 비독점적 사용권 허가에 따라 취득하는 기술양도소득을 기업소득세 특혜를 누리는 기술양도소득 범위에 포함시킨다. 거주민기업의 연간 기술양도소득 중 500만위안을 초과하지 않는 부분은 기업소득세를 전액 면제하며; 500만위안을 초과하는 부분은 기업소득세를 50% 감면한다.  기술이라 함은 특허(국방특허 포함), 컴퓨터 소프트웨어 저작권, 직접회로 배치설계권, 식물 신품종권, 생물의약 신품종권 및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이 확정한 기타 기술을 포함한다. 그 중에서 특허라 함은 법률에 의해 독점권을 부여받은 발명, 실용신안 및 제품의 도안과 모양에 대한 단순한 변경이 아닌 외관디자인을 지칭한다.  2. 기업이 5년 이상의 비독점적 사용권을 허가하는 조건에 부합되는 기술은 기업이 소유권을 보유한 기술에만 한한다. 기술 소유권의 권리귀속은 국무원 행정주관부서가 확정한다. 그 중에서, 특허의 권리귀속은 국가지적재산권국이 확정하고, 국방특허의 권리귀속은 총장비부가 확정하며, 컴퓨터 소프트웨어 저작권의 권리귀속은 국가판권국이 확정하고, 직접회로 배치설계권의 권리귀속은 국가지적재산권국이 확정하며, 식품 신품종권의 권리귀속은 농업부가 확정하고, 생물의약 신품종권의 권리귀속은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가 확정한다.  3. 조건에 부합되는 5년 이상의 비독점적 사용권 허가에 따른 기술양도소득은 다음 방식에 따라 산정한다.  기술양도소득 = 기술양도수입 - 무형자산 상각비 - 관련 세금·비용 - 배부 기간비용  기술양도소득이라 함은 양도인이 기술이전계약을 이행하는 대가로 취득하는 대금을 지칭하며 설비·기기·부품·원재료 등의 양도에 따르는 비(非)기술 성격의 소득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기술양도 프로젝트의 불가분한 항목이 아닌 기술자문, 서비스, 교육 등에 따르는 수입을 기술양도소득에 산입하여서는 아니된다. 기술사용권 허가에 따르는 기술양도소득은 사용권을 부여받는 자가 기술이전계약서의 약정에 따라 기술 사용료를 지급해야 하는 일자에 그 소득이 실현되는 것으로 확인한다.  무형자산 상각비라 함은 세법 규정에 따라 공제하는 당해 무형자산 가치의 당해연도 감소분을 지칭한다. 자사사용 및 제3자에 대한 사용 허가와 연관된 경우 수익 원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관련 세금·비용이라 함은 기술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발생하는 관련 세금과 비용을 지칭하며 기업소득세 및 공제가 허용된 증치세를 제외한 각 항목의 세금 및 그 부가금, 계약체결 비용, 변호사 비용 등 관련 비용을 포함한다.  배부 기간비용(무형자산 상각비와 기타 세금·비용 제외)이라 함은 기술 이전에 있어 당해 연도 매출수익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할당하는 기간비용을 지칭한다.  4. 기술양도소득의 기업소득세 특혜와 관련된 기타 문제는 <기술양도소득의 기업소득세 감면 관련 문제에 대한 국가세무총국의 통지>(국세함[2009]212호), <거주민기업의 기술양도 관련 기업소득세 정책 문제에 대한 재정부·국가세무총국의 통지>(재세[2010]111호), <기술양도소득의 기업소득세 감면 관련 문제에 대한 국가세무총국의 공고>(국가세무총국공고 2013년 제62호)의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5. 이 공고는 201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공고 시행일로부터 기업이 5년 이상의 비독점적 사용권을 허가함에 따라 확인된 기술양도소득은 이 공고에 따라 집행한다.  위와 같이 특별히 공고한다.  국가세무총국  2015년 11월 16일 |  | **国家税务总局**  **关于许可使用权技术转让所得企业所得税有关问题的公告**  国家税务总局公告2015年第82号  根据《中华人民共和国企业所得税法》及其实施条例、《财政部 国家税务总局关于将国家自主创新示范区有关税收试点政策推广到全国范围实施的通知》（财税〔2015〕116号）规定，现就许可使用权技术转让所得企业所得税有关问题公告如下：  一、自2015年10月1日起，全国范围内的居民企业转让5年（含，下同）以上非独占许可使用权取得的技术转让所得，纳入享受企业所得税优惠的技术转让所得范围。居民企业的年度技术转让所得不超过500万元的部分，免征企业所得税；超过500万元的部分，减半征收企业所得税。  所称技术包括专利（含国防专利）、计算机软件著作权、集成电路布图设计专有权、植物新品种权、生物医药新品种，以及财政部和国家税务总局确定的其他技术。其中，专利是指法律授予独占权的发明、实用新型以及非简单改变产品图案和形状的外观设计。  二、企业转让符合条件的5年以上非独占许可使用权的技术，限于其拥有所有权的技术。技术所有权的权属由国务院行政主管部门确定。其中，专利由国家知识产权局确定权属；国防专利由总装备部确定权属；计算机软件著作权由国家版权局确定权属；集成电路布图设计专有权由国家知识产权局确定权属；植物新品种权由农业部确定权属；生物医药新品种由国家食品药品监督管理总局确定权属。  三、符合条件的5年以上非独占许可使用权技术转让所得应按以下方法计算：  技术转让所得=技术转让收入-无形资产摊销费用-相关税费-应分摊期间费用  技术转让收入是指转让方履行技术转让合同后获得的价款，不包括销售或转让设备、仪器、零部件、原材料等非技术性收入。不属于与技术转让项目密不可分的技术咨询、服务、培训等收入，不得计入技术转让收入。技术许可使用权转让收入，应按转让协议约定的许可使用权人应付许可使用权使用费的日期确认收入的实现。  无形资产摊销费用是指该无形资产按税法规定当年计算摊销的费用。涉及自用和对外许可使用的，应按照受益原则合理划分。  相关税费是指技术转让过程中实际发生的有关税费，包括除企业所得税和允许抵扣的增值税以外的各项税金及其附加、合同签订费用、律师费等相关费用。  应分摊期间费用（不含无形资产摊销费用和相关税费）是指技术转让按照当年销售收入占比分摊的期间费用。  四、企业享受技术转让所得企业所得税优惠的其他相关问题，仍按照《国家税务总局关于技术转让所得减免企业所得税有关问题的通知》（国税函〔2009〕212号）、《财政部 国家税务总局关于居民企业技术转让有关企业所得税政策问题的通知》（财税〔2010〕111号）、《国家税务总局关于技术转让所得减免企业所得税有关问题的公告》（国家税务总局公告2013年第62号）规定执行。  五、本公告自2015年10月1日起施行。本公告实施之日起，企业转让5年以上非独占许可使用权确认的技术转让收入，按本公告执行。  特此公告。  国家税务总局  2015年11月16日 |